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178
----------	-------

발의연월일 : 2026. 4. 8.

발 의 자 : 이양수 · 한기호 · 김선교
서천호 · 서범수 · 엄태영
김태호 · 김미애 · 임종득
안상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 이남 10킬로미터 범위 이내에
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실질적인 민간통제선은 전 휴전선에서 가장 근접한 곳
은 200미터까지 단축되어 있으나, 일부 민간통제선의 경우 해당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되어 있어 접경지역 주민들의 토지 이용과 생활
활권에 제약이 크며, 지역 개발과 관광 자원 활용에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왔음.

또한 주민생활권이 확대되고 군사작전 개념도 달라졌기에 국가안보
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통선 북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민간인통제선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군의 효율적 작전환경 조성을 위하

여 조정하는 것임(안 제5조).

법률 제 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10킬로미터 범위”를 “3킬로미터 범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① (생략)</p> <p>②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의 이남 <u>10킬로미터 범위</u>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p> <p>③ · ④ (생략)</p>	<p>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3킬로미터 범위</u>----- -----.</p> <p>③ · ④ (현행과 같음)</p>